

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2023.07.05 제정

## 제 1 조 (목적)

이 기준은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고 함)” 제58조,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금소법’이라고 함)”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금소법, 금소법 시행령 등(이하 “관련법규”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“기본수수료”란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계약재산 또는 투자자문계약재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.
- ② “성과수수료”란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(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)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 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③ “기준지표 등”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고객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.

## 제 4 조 (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일임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

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회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투자자문, 투자일임수수료는 계약의 특성, 계약재산규모,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의 사전협의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, 고객과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.

구분	기본수수료	성과수수료	비고
기본형	계약재산의 연3.0%	-	
혼합형	계약재산의 연1.0%	기준수익률 연0% 초과하는 수익의 20%	
성과형	-	기준수익률 연0% 초과하는 수익의 30%	

- ③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며,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- ④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1.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자산이 운용된 경우
  2. 신의성실 위반 등 회사의 명확한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  3.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역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  4.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
#### 제 5 조 (수수료 체계)

-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1. 기본수수료만 지급(이하 이 조에서 “기본형”이라 한다)
  2.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(이하 이 조에서 “혼합형”이라 한다)

3. 성과수수료만 지급(이하 이조에서 “성과형”이라 한다)
- ② 혼합형, 성과형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본형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.

#### 제 6 조 (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)

회사는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1.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
2.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- 가.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(이하 “기준지표 등”이라 함)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
  - 나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
  - 다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- 라.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#### 제 7 조 (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의 증액 및 감액, 중도해지 등)

- ① 투자일임계약재산 또는 투자자문계약재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.
- ② 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 총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, 계약해지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기본수수료의 환급 및 해지수수료의 납입이 이루어져야한다.
- ③ 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.
- 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,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

반환한다.

#### **제 8 조 (수수료의 징수방법)**

- ① 고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서서비스의 대가로서 기본수수료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다
- ② 성과수수료는 계약기간 종료일(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)에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회사에게 지급한다.
- ③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CMS 출금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.

#### **제 9 조 (설명 의무)**

회사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10 조 (수수료의 고지)**

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## **제 11 조 (투자광고)**

회사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12 조 (공시)**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 **부 칙**

#### **제 1 조(시행일)**

이 기준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